

인문한국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인문한국(이하 “HK”라 한다)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HK 지원사업”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 연구소/단을 육성하는 HK 지원사업을 말한다.
2. “HK 연구인력”은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로, HK교원, HK연구교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.
 - 가. “HK교원”이라 함은 인문한국연구소에 상근하는 전임교원으로, 교원인사규정 제2조(교원의 종류)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포함되며, 사업 종료 후에도 교원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.
 - 나. “HK연구교원”이라 함은 HK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된 비전임교원으로, 교원인사규정 제2조(교원의 종류) 4항의 연구교원을 말한다.
 - 다. “일반연구원”이라 함은 HK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본교 전임교원을 말한다.
 - 라. “연구보조원”이라 함은 HK 지원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선발한 학부생, 대학원생, 학사급 연구원, 석사급 연구원을 말한다.
3. “지원”이라 함은 HK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,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HK 지원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HK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연구소의 구성) ①연구소는 HK 지원사업의 기준요건에 준하는 연구소장, HK교원, HK연구교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인력으로 구성된다.

②연구소는 HK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은 연구소장(당연직),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교내외 전문가와 HK교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소장 및 그 권한) ①연구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연구소장의 임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
③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의 연구교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인력의 임용과 복무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.

④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의 예산운영, 연구교원과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.

⑤연구소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.

제7조(HK교원) ①HK교원의 직급은 HK교수, HK부교수, HK조교수로 구분한다.

②HK교원의 신규 임용은 본교 ‘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’을 준용한다.

③HK교원의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은 본교 ‘교원재임용·승진임용·정년보장임용내규’를 준용하되, 신청자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신청자격	비고
재임용 (4년)	• 연간: 국내 B이상 200점 [국내 A급 2편(주) 포함] • 4년: 국내 B이상 800점 [국내 A급 6편(주), 국제 A 급 1편(주) 포함]	
승진 (4년)	• 연간 : 국내 B이상 200점 [국내 A급 2편(주) 포함] • 4년: 국내 B이상 800점 [국내 A급 6편(주), 국제 A급 1편(주) 포함]	
승진 (6년)	• 연간: 국내 B이상 200점 [국내 A급 2편(주) 포함] • 6년: 국내 B이상 1,200점[국내 A 8편 (주), 국제 A 급 2편(주) 포함]	국제논문 발표가 어려운 분야의 국제A급 1편(주)을 국내 A급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정년보장	• 연간 : 국내 B이상 200점 [국내 A급 2편(주) 포함] • 국내 B이상 1,200점 [국내 A급 8편 (주), 국제 A급 2편(주) 포함]	
- 신청자격 연구실적은 연간 요구 실적에 의한 환산이 아니라 국제 A 급 논문이 포함된 재임용 기간(4년) 및 승진 소요 기간(4년,6년) 동안의 통산 실적으로 한다.		

④HK교원의 보수는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, 임용기간별 평가에 의한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
⑤HK교원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,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강의를 할 수 있다. 단, 아젠다관련 강의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허용할 수 있다.

⑥HK교원은 연구소 소속으로 전임발령하며, 연구소에 상근하고, HK사업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.

⑦HK교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 인사 규정, 복무 규정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제8조(HK연구교원) ①HK연구교원의 직급은 HK연구교수, HK연구부교수, HK연구조교수로 구분한다.

②HK연구교원의 신규임용과 재임용은 본교 ‘연구교원임용규정’ 및 ‘연구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’에 따른다.

③HK연구교원의 보수는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, 임용기간별 평가에 의한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며, HK연구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보수의 10% 이내에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6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. 단, 아젠다관련 강의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허용할 수 있다.

⑤HK연구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받으며,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⑥HK연구교원의 임기는 HK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한다.

제9조(연구비중앙관리) ①연구소의 연구비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이 통합 관리한다.

②연구비 중앙관리체계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.

1. 연구수행과 행정의 분리
2.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체계화
3.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
제10조(업적평가위원회) ①HK 교원과 HK연구교원에 대한 평가는 본교 ‘교수업적평가규정’을 준용하며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강화된 평가내용 및 방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.

②연구소는 매년 한차례 이상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연구인력은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사, 성과급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.

③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연구인력은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, 결원이 생기는 즉시 연구소는 해당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체평가) ①HK 지원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평가위원회와 연구소 단위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.

②HK사업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에 환류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연구소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 운영 및 연구인력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세부사항) ①본교는 HK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,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한다.

②이 규정의 시행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